

## 유럽의 부채 제동장치

세입세출의 규제나, 재정정책의 권한 축소냐?

메흐트힐드 슈로텐, 독일 브레멘전문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07/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재정적자 억제조치(EDP) 대상국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 2011년 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재정 정책의 기본틀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신재정 협약을 통하여 각국에 부채 제동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적자의 허용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질 것이다.
-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들은 독일이 수출한 독일식 부채 제동장치가 아니다. 독일은 현재의 부채 상태 때문에 오히려 새로 도입된 규정에 입각하여 많은 시정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유리한 이자율을 투자자금 확보에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부채 상태에서 성장을 통해 저절로 빠져 나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이다.
- 유럽의 부채 제동장치는 부채 원인의 제거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금인하 경쟁, 금융시장 위기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빈곤으로 양분화되는 이원화 현상의 심화 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경제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정책 능력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2년 7월

---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은  
2012년 3월  
유럽 경제·통화동맹의 안정,  
협력과 조정에 관한 협약  
("신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만 동참하지 않았다.

---

## 배경

지난 몇 년 사이 은행권 위기, 금융시장 위기, 국가부채 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2007/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로존 회원국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인 국가부채 위기, 구제금융, 유럽안정화기구(ESM), 부채 제동장치(Schuldenbremse; 재정건전화 방안)는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은 2012년 3월 유럽 경제·통화동맹의 안정, 협력과 조정에 관한 협약("신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sup>1)</sup>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만 동참하지 않았다. 신재정 협약은 모든 가입국이 정부 차원에서 부채 제동장치를 도입하고 헌법에도 정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정 협약은 2013년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정 협약이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 12개국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재정협약 제동장치(Fiskalpakt bremse)"를 통하여 공공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고 억제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그리고 공공부채의 억제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금융부문과 유로존 회원국들을 위해 향후 도입될 구제 프로그램들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유로 구제금융의 규모가 최근 확대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 식스팩

재정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유럽연합은 이미 2011년 말 재정정책의 기본틀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명 식스팩이 발효된 것이다.<sup>2)</sup> 그 결과, 정부의 부채 수준이 재정적자 억제조치(EDP) 시행을 위한 요건으로서 과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부채비율이 유럽연합이 정한 상한선인 GDP의 60%를 넘을 경우 재정적자 억제조치(EDP)가 시행된다. 이 부채비율 기준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로화 도입 이후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GDP 대비 정부의 부채비율이 상한선 이하 일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까지 허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매년 초과되는 부채액의 1/20만큼 줄여야 한다.

식스팩은 이 밖에도 위기 예방을 강조한다. 식스팩은 각국에게 중기적 예산 계획을 세우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안정성 강화를 꾀한다. 더

나아가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국가에 적용하는 규제의 개선 그리고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은 국제수지, 국제부채, 단위 노동 비용과 실업률 같은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지표에 대해서는 한계값이 설정되어 있고, 이 값을 초과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한계값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대부분의 경우 찾기 어렵다.

이러한 조기 경보시스템의 지표들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개정이 경제성장이라는 요소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GDP 또는 산업생산량 등은 조기경보 지표로서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GDP는 부채비율 산출 시 간접적으로만 고려된다. 새로운 규정들은 유럽연합이 재정 안정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가 되어야 해당 회원국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식스팩의 최종 목표는 재정정책의 기본틀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 관련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새로운 규정들은

유럽연합이 재정 안정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가 되어야 해당 회원국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식스팩의 최종 목표는 재정정책의 기본틀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 관련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 이미 시작된 여러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억제조치(EDP)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23개 국가에서 재정적자 억제조치(EDP)가 실시되었다.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만 이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조치의 대상 국가의 수만 봐도, 공공부채와 적자 문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상 국가들은 여러 그룹으로 분류된다. 재정적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정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 모두 매우 높은 국가들도 있고, 정부부채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재정적자 비율은 낮은 국가들도 있다.

독일은 마지막 유형의 재정적자 억제조치(EDP) 대상 국가다. 현재 독일의 재정적자는 유럽연합의 상한선보다 낮지만,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0%를 명백하게 초과한 상태다. 독일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2%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독일은 현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채 비율을 낮춰야만 한다. 따라서 독일은 자본시장의 유리한 상황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독일은 특히 건설 분야에서 자금조달 수요가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연성만 봐도, 더욱 엄격해진 규칙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인하여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 관련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신재정 협약, 더 엄격한 규칙 적용

신재정 협약은 기존의 GDP 대비 부채비율 6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적자비율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적자를 구조적 재정적자와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로 구분한다. 신재정 협약은 경기 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 산출 시에는 경기에 의한 수입 및 지출 변동과 경제 안정화 조치와 같은 조치들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 등이 반영되어 있다. 구조적 재정적자 즉, 경기 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적자는 경기 변동 때문에 야기 되는 적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구조적 적자가 부채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경기 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구조적 적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식스팩의 새 규정들이 정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신재정 협약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회원국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sup>3)</sup>

### 구조적 적자 - 짐작할 수 없는 규모

신재정 협약의 발효와 함께 국가부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억제된다. 즉, 국가부채는 부채비율 상한선 제정과 구조적 적자의 제한을 통하여 억제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신재정 협약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는 재정정책 차원에서 여러 탈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 적자”라는 개념은 사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sup>4)</sup>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 따라 좌우되는 반면, 구조적 재정적자 즉, 경기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재정적자는 상당히 지속적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적 적자의 원인들은 나라마다 다른데, 신재정 협약은 이 원인들을 분석하고 퇴치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와 경기 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거된 구조적 재정적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출방식과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 산출 기준을 둘러싼 장기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정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유럽의 재정정책은 개념 정의와 개념 구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다른 곳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정책 관련 자원들이 소모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념 정의를 둘러싼 줄다리기” 과정에서 개념

---

경기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 따라 좌우되는 반면, 구조적 재정적자 즉, 경기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재정적자는 상당히 지속적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

정의 또는 개념 구분을 둘러싼 논쟁이 원래 엄격했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인상을 풍기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재정 협약 자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 결과, 신재정 협약이 목표한 금융시장 안정화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 국가의 공공재정은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통한 국가지출 자금을 확보하고 대신 상당히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채 위기는 곧 신뢰 위기이기도 하다. “개념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하여 현재 위기 예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노력이 대부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럽 신재정 협약, 독일에 어떤 의미?

신재정 협약이 규정하는 재정적자의 상한선은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상한선보다 다소 높다. 독일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0.3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2016년부터 연방차원에 적용된다.<sup>5)</sup> 흔히 독일식 부채 제동장치가 단순히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자 제한은 장기적인 이행 기한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2020년이 되어야 모든 연방주에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신재정 협약은 처음부터 공공재정에서 부채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적용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재정 협약으로 인하여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마저 상당한 조율 작업을 시행하게 생겼다.

독일은 신재정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채비율 상한선인 GDP 대비 60%를 명백히 초과한 상태다. 물론 GDP 대비 약 80%인 현재의 부채 상태에서 성장을 통해 저절로 빠져 나오는 것은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방법으로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신재정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부채비율의 감소 속도가 경제 전체의 발전 속도를 늦출 위험이 있다.

### 채무, 이자 그리고 채권은 경제질서의 기본요소

공공재정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세수입을 통한 자금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차용 즉, 국채를 통한 확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시장 이자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민간 신용평가기관이 공공재정의 신용등급을 낮추게

---

공공재정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세수입을 통한 자금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차용 즉, 국채를 통한 확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시장 이자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차용 비용이 증가한다.<sup>6)</sup> 그리고 인상된 차용 비용은 다시 부채를 높인다. 금융시장의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새롭게 적용되는 재정 정책 규정들에 의해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채와 적자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들을 유럽에 적용하면, 국민경제를 위해 중요한 다수의 측면들이 간과될 수 있다. 엄격한 기준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가 자금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의 효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 이익은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회수되기 때문에 자금시장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규모가 큰 투자는 민간기업 역시 차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채의 이면에는 항상 채권이 있다. 발달된 시장경제 체제라면 국가가 자금을 차용할 때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의 채권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매우 좋은 상태다. 만약 유럽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가의 채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유럽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국채발행 제한으로 인하여 비유럽 국가들이 장기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좋는데 시장 이자율이 낮은 현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가 높고 수익이 큰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리스크가 큰 투자는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 의한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은행권 위기, 금융시장 위기, 국가부채 위기의 악순환이 완전히 중단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

재정정책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의 궁극적 목표는 부채위기 예방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단순히 재정정책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부채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년 째 계속되어 온 유럽의 세금인하 경쟁,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빈곤으로 양분화되는 이원화 현상의 심화를 비롯하여 은행 구제프로그램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시장 자율화의 비용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은 수년 동안 축적된 민간부문의 부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발생하자 그것을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예를 들어, 은행 구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산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부분을

---

재정정책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의 궁극적 목표는 부채위기 예방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단순히 재정정책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

공공부문의 부채청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 있다. 특히 수년 동안 이뤄진 아래에서 위로의 재분배는 민간부문에서 부의 불균형한 분배에 기여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즉, 부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여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체계화된 재산세 제도는 국가부채의 급속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부유층이 납부하는 이 세금은 이 외에도 다른 긍정적 효과들을 수반할 것이다. 우선은 떠돌아 다니는 투기성 자본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재산세가 사회의 빈부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안정화 효과가 있다.

요약하면, 정치권은 신재정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활용 즉, 조세수입 증대라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유연하게 임의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다.<sup>8)</sup>

### 유럽 재정정책에 걸린 제동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정책적 목표가 단순히 규정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강화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과 신재정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국가부채의 원인을 밝혀내고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재정 협약이 국가부채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각국의 향후 재정정책과 관련한 선택권이나 자율성을 제한할 뿐이다. 신재정 협약은 각국의 공공재정이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유연성이 떨어지고, 강경하며, 유럽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은행권 및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들을 감수할 만큼의 충분한 정치적 용기와 의지는 부재한 상황이다.<sup>9)</sup>

공공부문의 적자와 부채는 오래 전부터 신자유주의를 지향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다. 2007/2008년 발발한 국제금융위기는 국가의 행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과 신재정 협약은 각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한 선택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 일부 유럽회원국이 지불불능 상태가 된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범위한 부채 제동장치는 오히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성장 제동장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유럽의 재정정책 능력은 하필 경제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질 것이다. 아직은 유럽이 사고의 전환을 할 기회가 있다.

---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정책적 목표가 단순히 규정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강화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과 신재정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 | 후주 |

- 1) 그 이전, 2011년 12월에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재정안정동맹을 만들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신재정 협약은 각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2) 식스팩은 다섯 개의 법규 명령과 한 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안정 관련 규제 패키지다.  
EU 집행위원회(2011): EU 식스팩이 경제정책 조정을 위하여 발효된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11/898&format=HTML&aged=0&language=DE&guiLanguage=en> (2012년 4월 12일자).
- 3) 강화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적자 상한선은 GDP 대비 3%이다. 이때 “적자의 종류”를 잘 구분해야 한다. 신재정 협약에서도 3% 적자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신재정 협약은 다양한 적자 요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4) 경기 변동에 의한 적자가 제외된 구조적 적자는 공공부문의 실질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않는다.
- 5) 연방주들은 앞으로 조율된 균형 잡힌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
- 6) 슈로텐, 메흐트힐드(2011): 유럽의 신용등급기관, 목적과 가능성(Schrooten, Mechthild (2011): Europäische Rating-Agentur. Zweck und Optionen).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8693.pdf>.
- 7) 참조: 대안적 경제정책(2012): 제안서 2012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2012): Memorandum 2012).
- 8)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 9) 기존 은행에 대한 감시에 비해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슈로텐, 메흐트힐드(2012): 그림자은행, 타파해야 한다 (Schrooten, Mechthild (2012): Schattenbanken gehören abgeschafft), 출처: Wirtschaftsdienst 4/2012.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mailto: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2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